



해고자 원직복직 산자부 천막농성 13일차 / 피켓 시위 37일차 해고자복직 준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전환합의... 이후 빠른 복직논의 진행돼야

해고자복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2019. 10. 4) 합의사항

1. 특별위원회 구성은 발전노조 3, 기업노조(남동/동서/서부) 3, 회사(남동/동서/서부) 3, 전문가 3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2. 차기 회의는 준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한다.
3.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구성, 복직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서 논의 한다.
4. 차기 회의는 10월 24일 14시에 시행한다.

해고자복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가 드디어(?) "준비"라는 딱지를 떼고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기로 10월 4일 회의에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에 준비위원회가 시작됐으니,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복직논의를 위해 한걸음 나아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 10/7(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발전노조

발전노조는 요구한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해고자 복직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빨리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이는 **사장들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다. 비단 문재인정부 들어선 후 남동발전의 이준상씨 복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다른 노조 예를 들지 않더라도 발전노조 단일 시절인 2004년, **노사합의로 해고자를 복직 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해고자 산자부 천막농성이 13일차를 지나고 있다. 휴일을 제외한 농성이기에 13일차이지 천막농성 시작한지 보름이 됐다. 앞으로 진행될 특별위원회에서는 발전노조가 우려하는 **회사의 시간끌기는 없길** 바란다. 누구보다 투쟁에 앞장섰던

해고동지들, 이제는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발전노조 서부본부 산하지부 해고자 원직복직 선전전 진행(3주차)



<태안화력지부>



<평택화력지부>



<서인천복합화력지부>



<군산복합화력지부>



알고 있나요?

임금피크제 대상자 노동시간 단축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2018년 12월, 임금피크제 양대노총 공대위-기재부 협의결과 원포인트 긴급 제도 개선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주 32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서 개인에게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된다. 2019년 12월 31일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가 중단되므로,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시 경과규정을 통해 2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2010년 1월부터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

발전노조는 5개(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회사와 기업노조에게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 운영상 변경사항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 다소나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노동시간 단축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용) 조치를 요구했으며, 올해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박근혜정권 시절 밀어붙인 대표적인 노동적폐 중 하나이다. 그동안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했다. 발전노조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양대노총 공대위를 통해 기재부에 임금피크제 폐기 등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의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용을 얻어낸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좀 더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



▲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 모습(2019. 7. 9 / 세종시 기재부 앞)

발전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Tip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기간을 정산 받은 다음날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의하면 기존 정산 받은 퇴직소득과 퇴직 시 받을 퇴직소득의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근속기간 합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근속년수 공제제도에 의하면 근속년수가 길수록 근속년수 공제액이 많아짐으로 세액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발전회사가 한전에서 자회사로 전환 시, 또는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분할하여 계산한 세액과 근속기간을 합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작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부분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대다수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발전노조의 요구로 동서발전 경우 시행하기로 했고, 타 발전회사에도 알려낼 예정입니다.